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2002. 11.

국가인권위원회



EM006212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회 -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SCHEDULE

#### 목 차

##### 사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1

김 덕 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토론 1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5

김 상 겹 (동국대학교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회 시민입법위원)

##### 토론 2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2

한 상 희 (건국대학교 교수/참여연대)

##### 토론 3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바라보며..... 20

이 승 호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 4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26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김 덕 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 제2차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금지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의 하나로 되었다. 오늘날 인권을 다루고 있는 국제적 문서는 모두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5조),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제3조), 1950년 유럽인권협약(제3조),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관한국체규약(제7조 및 제10조 제1항), 1969년 미주인권협약(제5조 제2항), 1981년 인간 및 인민에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제5조), 1981년 보편적 이슬람인권선언(제7조) 및 1984년 "고문및기타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또는처벌을금지 하는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약칭 고문방지협약이라 함)은 모두 이러한 부류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2. 우리 헌법도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규정을 두

고 있다.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은 한국국민이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 있음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은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에서는 고문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고문 및 기타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더욱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고문 등의 행위들이 피의자·피고인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헌법은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체포 또는 구속의 고지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제12조 제5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의 규정을 통하여 고문의 한 형태로 불법적 감금이나 체포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한 구금 하에서의 고문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하위 법규들은 헌법에서 인정된 제반 권리의 구체적인 보장과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균형법상의 다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230조, 행형법 제5조 및 제6조, 소년원법 제10조 및 제11조, 군행형법 제3조 및 제4조,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5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64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24조 및 제27-29조,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57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38조 및 제167조,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2조 및 제40조,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경찰청훈령 제61호) 제4조, 경찰업무편람(8-4 유치장 관리, 유치인 인권옹호 및 교양),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293호)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및 제97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411호) 제7조, 소년원생수용지침(법무부훈령 제265호) 제4조 및 제19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 청원법 제4조 및 제11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조, 형사보상법 제1조, 제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및 제7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 및 제19조 등도 위 헌법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예로 들 수 있다.

3. 지난 10월 26일 경기 파주일대 폭력조직 S파의 두 개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문 등 가혹행위는 1987년 박종철군 물고문치사 사건 이후 이 땅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고, 인권 국가인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검찰의 수사가 과학적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선진 수사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기존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밀실수사, 밤샘수사, 검사 입회 없이 참여계장에 의하여 작성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은 수사관들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여 왔으나 검찰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이번 사건의 대책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할 예정이라 한다.

대법원도 1981. 10. 13. 81도2160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의 자백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는 등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 혹은 이에 기한 증거능력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5. 그러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①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②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③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 ④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용방안, ⑤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상 문제점의 5개의 분야로 크게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고 그 대책을 의논하기로 한다.

##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방지를 위한 대책

김 상 겸

(동국대학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1. 들어가는 말

최근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사망사건과 물고문에 대한 의혹제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경우처럼 명백하게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피의자의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직접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피의자의 자백만 있어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어 온 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위상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물론 결과로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질, 검찰 자체의 내부문책, 담당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속

등 외형적으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 초유의 수사담당 검사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도출시킨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차제에 검찰수사이든 경찰수사이든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하고, 또한 검찰의 의식개혁도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의식도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하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켜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 2. 가혹행위금지의 법적 근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위헌이며 위법이다. 헌법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대기본권 기속성이 그 핵심이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다.

### (1) 헌법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이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존엄은 그 구체적 표현인 개별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가치적 실천기준으로 국민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12조는 제2항에 명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7항은 고문 등과 같은 가혹행위 내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진수된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조 제1항은 심문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체포와 구속의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하고 있다.

## (2) 법률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비인도적·비인간적 가혹행위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실정법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률상 가혹행위 금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고문 등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형법상의 규정과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법적 근거 이외에도 국제법의 수용을 통하여 가혹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B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문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고문금지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이런 국제협약에 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가혹행위 금지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규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전체국민의 봉사자로서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설혹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가혹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불

법국가의 행위이다.

### 3. 가혹행위근절과 금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

#### (1) 가혹행위 금지를 위한 검찰의 대책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신속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동안의 수사관행을 근절하는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밀실·강압수사의 논란을 빚은 검찰청사 내의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나,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검찰청사 내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관직’의 신설 등이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기존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증거위주의 과학 수사기법의 확대 도입, 참고인의 강제출석시킬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참고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범방해죄 등의 입법화와 수사협조시 형의 감경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의 대책 중 참고인 강제구인제의 경우 국민에게 법이 강제로 검찰에 출석하게 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자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2) 가혹행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허용문제

체포·구속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헌법 제12조 제4항). 그렇지만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직원에 의한 단독조사, 철야수사 등으로 피의자의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가운데 피의자는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또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대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이어서 변호인의 조력권의 실질화를 통한 인권보장의 확대라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미리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변호관련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자백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현 사건에서처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수사나 강압수사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검찰수사에서 치밀한 과학수사에 의한 물증의 확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가혹수사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에 의존하게 한다.

이 문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백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심증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입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앞의 형소법 조항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 ③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복원문제

가혹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절차적 보장의 입장에서 보면 영장의 실질심사의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7년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필수적 심사제도에서 선택적 심사제도로 바뀌면서 국제인권법이 요

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청구에 앞서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게되어 인권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 ④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권리강화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 것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상태에서는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해서는 소송계속 중의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법적 보장이 확대된다 하여도 경제적 약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⑤ 기타 제도적 개선의 문제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00조의 4에 의하여 검사재량으로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체포제도 역시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위헌적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신청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공무원 등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정신청제도의 대상 범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사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맺음말

검찰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그동안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로 정치적 중립 내지 독립의 문제만 검찰개혁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검찰제도의 개선문제는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불거져 나온 인권문제는 앞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보장과 관련된 실정법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미 가입하여 발효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등 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내법적으로도 가혹행위금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의식의 좀 더 적극적 전환과 함께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구성원의 실정법에 근거한 철저한 인권의식의 신장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 형벌권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위상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우려는 단순히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마저 위축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가의 형벌권행사의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 개선을 통하여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한 상 희

(건국대학교 교수/참여연대)

### 문제의 인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인간성의 보장은 그 어떤 이유에서건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장 금기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의 해산사유(제8조 제4항)가 되기도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물론, 우리 헌법의 뚜렷한 작동기제가 되는 적법절차의 원칙 등은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국가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근자에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우리 헌법이 그 수호자격이어야 할 검찰에 의하여 치명적 암종을 배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그것이 수사성과에 대한 검찰관·수사관의 정의감의 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과지향적인 욕망의 표지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검찰관·수사관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러는 검찰조직 자체의 폐단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건 자체가 우리 헌법이념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 검찰조직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불평이나 동정론들을 대면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우리들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 그 본질까지도 회의하게 만든다.

권위주의적 통치가 민주화의 열풍에 의하여 서서히 스러지는 오늘날에 있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굳이 헌법이념이나 헌법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제인권법의 규율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민주화의 과정들이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오히려 이제부터 새로운 민주화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권위주의시대에서 고문으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국가의 이름으로 경멸하고 조롱하며, 법의 이름으로 패대기치고 물 끼얹는, 그 잔혹의 역사가 의연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조직폭력사건의 수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다면, ‘양아치’에 대한 수사는 몇 대 쥐어 박는 방법이 있고, 좀도둑 수사는 욕지꺼리를 퍼 붓는 방법이 있고, 어쩌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양민’은 반말투와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며, 검찰권력을 전면에 내세운 국가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권위주의 국가로 조금씩 자리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토론문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 방안들은 물론 지선의 것은 아니다. 하나를 얻고나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안에 불과할 따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가치형량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토론문은 보다 정확히 보자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에 관한 토론자의 제안일 뿐이다.

## 몇 가지 방지책

### 2.1. 견제와 균형 - 그 절제의 미덕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최우선적 방안은 수사과정 자체를 감시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최선의 방지책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시장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수입가액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러한 방책은 오로지 가진 자 혹은 헐리우드 영화식으로 보자면 조직폭력배의 경우에만 그 변호인수사참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몇 시간 혹은 수 일에 걸치는 수사과정을 내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변호사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실제 이들에 대하여는 수사관도 함부로 가혹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몇 가지 부가적인 조건이 따라야만 그 의미가 확보될 수 있다. 첫째, 국선변호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만 국선변호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를 모든 구속사건과 더불어 구속이 예정되는 체포사건에 대하여까지 확대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선변호를 위한 국가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그렇다고 해도 국선변호인이 그 ‘작은’덧가로 수사과정 내내 피의자나 혐의자 옆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 혹은 혐의자가 심문과정-특히 수사직후-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수사를 받는 현장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혹은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다. 만일 심문과정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인이 CCTV를 통하여 수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사직후에 수사현장에서 의뢰인을 면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채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수사현장에 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당직변호사제도를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단위로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시간대별로 이 변호사의 당직을 할당, 그 시간단위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것이 검찰에 대한 변호인의 감시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가혹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검찰견제장치가 바로 법원이다. 실제 우리 법제는 불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검사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고, 만일 피고인이 그 조서 기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애써 이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의 법적 통제장치도 불법수집증거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불법한 수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파생적 증거-예컨대, 가혹행위의 결과 얻은 진술에 기초하여 검찰이 스스로 수집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는 별다른 통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스스로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공범이 되고 있다. 즉, 법원이 검찰의 불법에 대하여 눈감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채택 및 유죄판단으로 용인하고 있음은 그 자체가 검찰로 하여금 과학수사라고 하는 고통스런 길보다는 자백을 중심으로 하는 손쉬운 길을 선택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개선방안은 그리 마땅하지 않다. 몇 가지의 법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일제 이래 누적되어 왔던 법원의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자백사건이 법원을 편하게 하는 사건일 것이다) 오히려 가장 본원적인 개혁은 배심제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술 밥”식 구일 수밖에 없는 검찰과 판사의 공생관계를 깨치는 길은 사법의 민주화뿐이기 때문이다.

넷째, 또다른 견제의 장치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권력분립이다. 현재는 법무부 조직이 검찰청 조직을 그대로 복제하면서 두 조직 모두가 검찰로써 충원되고 있다. 따라서 가혹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처벌하여야 할 역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될 수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든 검찰청이든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법무부의 검찰국은 폐지하거나 가능한 한 축소하고, 현재의 법무실을 인권국과 송무국으로 개편하면서 이

인권국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혹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무부의 인력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아닌 일반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로 충당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사기능의 분립 역시 심각히 고려해 볼 때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명제가 제기된 지 벌써 십수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검찰측의 반대에 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실제, 경미범죄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몇 가지 점에서 제도적 장점을 가진다. 그것은 ①업무분할에 따라 검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단위사건당 검찰이 투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양을 증가시켜 과학적 수사를 가능케 하며, ②검찰과 경찰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여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이, 역으로 경찰의 그것에 대하여는 검찰이 상호 조사 혹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다.

## 2.2. 수사의 과학화?

검찰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거론되는 화두가 수사의 과학화 혹은 과학적 수사의 필요성 문제이다. 하지만, 수사의 과학화라는 명제는 단순히 어떠한 수사기법의 개발 혹은 첨단수사장치의 도입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도 보듯, 그것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범죄자들을 수없이 무죄방면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일 따름이다. “열 명의 범죄자는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는” 과오를 없애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제는 달리 보자면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시행착오를 헌법 그 자체가 예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없이 설정되어 있는 각종의 검증장치들은 범죄자의 유죄입증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반성적 여과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서 수사당국은 그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수사의 기법과 각종의 입증장치들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있는 직후 검찰 내부에서 “이제 수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불평은 역으로 우리 형사사법과정에서 수사의 과학화를 촉구할 만한 그 어떠한 장

치도 작동되지 않아 왔음을 반증한다. “과학”은 필요에 의하여 창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형사사법과정은 그러한 필요를 자아내지 못하였던 것임이 이 사건을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입증”은 곧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무리와 편법 혹은 법외곡은 검찰작성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라는 법원의 편의주의에 의하여 은폐·엄폐되어 왔다. 이런 실정에서 “수사의 과학화”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려는 조직이기주의의 한 통로였을 뿐이라는 불멘 소리조차 가능케 한다.

여기서 우리의 판단은 간단하다. 수사의 과학화는 예산과 조직, 자원의 배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증거와 입증을 배척하는 것즉, 과감한 무죄판단-혹은 변호인의 증거배척항변에 대한 과감한 수용-에 의한 “범죄인”의 대량 석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죄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압박하고 그들의 실적주의를 위협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합리적 입증의 길을 모색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 뿐이다.

### 2.3. 조직내부의 문제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하여야 할 것은 검찰 및 검찰수사관의 자질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검찰조직은 철저하게 관료적 모델에 입각해 있다. 수직적 계층조직을 바탕으로 성과주의에 의거한 승진제도와 권위적 관료모델에 입각한 인적 구성원들이 검찰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검찰 조직 그 자체가 시민사회와 뚜렷하게 단절되어 있는 폐쇄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곧장 검찰관을 충원하고, 각종 고시를 통하여 9급·7급·5급의 수사관들을 충원하고 이들이 계층서열을 따라 승진 혹은 보직을 받으면서 스스로 검찰관료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계속하여 재생산되는 구조를 보인다. 검찰은 그 자체 어느 누구로부터도(정치권력은 예외일지 모른다)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자신들만이 형사사법의 최전선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가 정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기관집단의식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

서조차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적 정의를 집행하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우선적 대우를 받고, 그 지위를 통하여 피고인 위에 군림하며, 피고인은 인간이기 보다는 하나의 범죄자일 뿐이라는 집단의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보거나름으로는 관료주의의 병폐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예이기도 한, 이러한 검찰조직의 특성은 급기야는 성과라는 목적으로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혹은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 작태까지도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 검찰인사의 개방 및 검찰위계의 철폐는 중요한 시대적 당위를 띠게 된다. 현재와 같은 검찰의 폐쇄회로를 걷어내고 검찰 및 수사관을 외부(즉, 변호사 혹은 경찰수사관리 등)로부터 충원하는 등 검찰의 내부관계를 다원적 구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내부적인 통제와 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도 상명하복 및 계층구조에 침윤되어 있는 검찰구조를 보다 수평적·병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시행착오의 교훈

전술하였거니와, 시행착오는 결코 절대악이 아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환언하자면,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우를 범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각오로써 오늘의 이 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실천할 때, 비록 느린 성과일 수는 있겠지만, 놓쳐 버린 열 명의 범죄자도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된다. 비록 그 사이에 열 명 혹은 아홉 명, 여덟 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틈새를 통하여 검찰에게 다가오는 것은 비난 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신뢰와 친숙함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협조는 역으로 전방위의 범죄감시망의 구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수사의 과학화 담론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 라는 점이다. 우리가 고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는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완벽성 때문이 아니라 그 과학과 기술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A. Giddens의 말은 바로 이 때문에 더욱 와 닿는다.

##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바라보며

이 승 호

(건국대학교 교수)

### 1.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을 정책지향의 화두로 내걸었던 ‘국민의 정부’는 퇴진을 목전에 앞두고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옛 시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치부했던 고문치사 사건이 그야말로 난데없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것도 여타 수사기관들의 감독을 자처하는 검찰에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내막은 익히 알려진 터이므로 별도의 소개는 약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통해 새삼 인식하게 된 현금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우리의 수사는 고문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수사기관은 고문에 대해 뿌리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권 차원의 비호 하에 고문이 실행되었다. 반면 그 동안 자행되어 온 수많은 고문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처벌은 그야말로 미미한 실정이다. 당시의 고문 담당자들은 수사 일선에 아직도 존재해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인권국가를 표방했다고 하지만, 수사 현장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었다. 변하지

않은 시스템 하에서 그 때 그 사람이 수사하는데 어떻게 고문의 관행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것인가?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사회의 인식일 뿐이었다. 이제 고문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 적어도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다는 자위만이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금번의 고문치사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성급했던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고문은 아직 우리의 수사관행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 경각심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실정인 것이다.

둘째, 검찰도 고문을 한다는 사실이다. 아니 지금까지 쪽 해 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다. 자타가 인정하듯, 검찰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가장 정통적이고 핵심적인 섹트이다.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여타의 정보 및 군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대상의 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검찰의 인적 자원은 최상급의 수사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회인식은 적어도 검찰만큼은 직접 고문을 실행하는 수사관행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다. 때문에 그동안 간간이 거론되던 검찰의 고문에 대한 소문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넘어가곤 하였다. 그런데 금번의 사건은 이러한 일반의 상식적인 인식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겠다는 검찰이 스스로 고문관행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다른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요원해진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문제성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 2.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대처

결국 고문이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수사과정의 악이라면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미 행해진 고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수사기관이 고문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배경에는 뒤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그 동안의 체험이 놓여있다. 이래서는 고문문화가 뿌리뽑

힐 수 없다. 사후대책의 엄정함이 위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고문관행에 대한 사후대책의 중심 축으로 소위 증거능력의 문제를 거론해 왔다. 고문으로 얻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철저히 배제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증거를 얻기 위해 고문을 행하는 것이니 그렇게 얻어진 증거를 증거세계에서 쫓아버리면 수사기관이 고문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우리의 사법부는 형사소송법 309조에 의거하여 고문으로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나름대로 축적해 왔다. 고문과 증거 사이에 인과성을 요구하는 등 일정 부분 미진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문의 실행여부를 판정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제309조의 적용범위를 확대 설정함에 있어서 사법부는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고문이 드러나는 한 턱없이 유죄판결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능력 배제의 정책은 우리의 수사관행에서 고문을 완전히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같다. 기소 이후 고문에 대한 시비가 원활한 공소유지에 장애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난 후에도 수사기관의 고문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일선에서는 사법부의 적법절차 준수 요구를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무시하는 경향까지 내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나쁜 놈들인데 조금 심하게 다루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면서 고문을 ‘또 하나의 제재’로 인식하고 취급한다. 단순히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문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부과하는 수사단계의 페널티로 기능하는 것이다. 즉, 고문은 변형된 형벌이 된다. 따라서 고문당한 피의자는 설령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여도 이미 당할 만큼은 당한 셈이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문은 증거능력의 세계에서 따돌려져도 기가 죽지 않는다. 자기의 역할은 딱 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고문의 의미가 이렇다면, 고문에 대한 사후대책의 중심 축은 증거능력 운운

의 방책보다 고문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고문은 범죄이다. 그것도 잔인하고 악독한 최상위의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마땅히 엄한 처벌이 실행되어야 한다. 상대가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라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혹은 그 동안의 수사 업적상 공훈을 고려하여 관용을 베푸자는 주장도 제기되나, 바로 이러한 태도가 고문을 비호하게 된다. 오히려 피의자에 대해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중한 범법을 저질렀으니, 일반인의 범죄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소되고 최고형이 구형되며, 사법부는 강경하게 재판해야 한다. 이러한 정공법만이 고문을 근절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의 형사사법은 고문관련자의 처벌에 있어서 관대함을 넘어서 ‘같은 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혹 재판단계까지 회부된 사안에 있어서도 사법부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으며, 원칙 없는 사면과 가석방은 몇 안 되는 고문관련 실행 복역자를 안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법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반드시 처벌되고, 그것도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 형사사법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만 고문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3. 고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대책 못지 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소위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찰은 이미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아직 변호인 입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적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가름 짓는 첫 무대인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영역에서 변호인의 활동을 차단해 버리면 게임의 반은 이미 불공정하게 끝나 버린다. 게다가 밀

실의 홈그라운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만을 상대로 신문을 하다보니 고문의 유혹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호인 입회권을 추가하는 것은 마땅한 향후의 과제이지만, 이미 유엔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고 한국대표단 역시 이에 찬성표를 던진 현금의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미비를 핑계삼아 변호인 입회의 허용을 미루거나 유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실제로 변호인 입회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것 또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실 변호인의 입회는 보장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 수사기관의 불법수사 방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밤샘수사의 관행도 차제에 없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실무는 밤샘수사와 잠안재우기 수사를 구별하여 전자는 허용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액면 그대로 잠안재우기가 아닌 밤샘수사라고 하여도, 밤에 행하는 수사는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밤샘수사는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잠안재우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애매한 태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밤샘수사는 가혹한 수사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번의 검찰 고문치사 사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특히 검찰은 스스로 인권침해의 감독기관임을 자처하면서 그 동안 외부의 감시를 배척하고 무시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실이 인권침해에 무방비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제 외부의 감시를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외부단체들의 인권감시의 활동에 보다 전향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야 하며, 이러한 자세가 바탕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수사문화는 선진적으로 정착되리라 사료된다.

#### 4.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고

이번의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에서 발생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담당검사까지 구속되었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식으로 검사는 법집행 분야의 최고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검사에게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검사 작성의 조서와 경찰 작성의 조서가 증거능력의 인정에서 차등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형사사법 기관의 위상에 있어서 이미 검사는 경찰의 상위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형사사법 구도는 마땅히 검사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된다. 적어도 검사는 전문 법률가로서 소위 준법조기관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의 꽃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상황을 심안해 보면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검사에 대한 편애적 믿음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그 동안의 존중이 검찰의 오만을 부추기었고, 그 결과 검찰의 추락을 낳지 않았나 반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연 검사와 경찰의 지위를 지금처럼 상하관계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설정하여 상호 경쟁과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 기관의 자정을 위해 바람직할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로이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규정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직접주의의 재판원칙을 관철하여 검사작성이든 경찰작성이든 조서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어차피 조서를 증거의 세계에서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차등적으로 선호하는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실제의 수사가 경찰과 검찰수사관에 의해 행해진다는 현실에 분명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김 성 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1.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은 반드시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즉 고문은 법률상 허용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국가의 불법행위이다. 특히 2001년도에는 법무부의 주관하에 이른바 준범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 법무부 산하 검찰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또 다시 고문의 망령이 떠돌게 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고문이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국가의 불법행위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사회질서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무너져내리고 있는 정의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하에 혹은 실적위주의 수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끊임없는 고문에의 유혹을 받는다. 특히 명백히 범죄를 행위를 한 현행범인이나 조직폭력집단의 구성원등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은 그들을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대해 좋다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된다.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적/수단관계의 일반론은 여기서도 여

전히 타당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요구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측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펴왔으나, 1999년부터는 경찰청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입회요구에 응할 수 있음을 내규로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사유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변호사들이 변호인입회를 충실히 요청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검찰고문치사사건이후 2002년 11월 15일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고문수사재발 방지 종합대책’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학계에서의 오랫동안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빨리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격상되는 수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형사절차가 피의자에게 초점을 두어 자백을 유도해내려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이미 당사주의적 소송구조가 작동을 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처사는 그야말로 변호인없는 절차속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하지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첫째,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은 거기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에 변호인이 기꺼이 동참하려는 동기부여가 생기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둘째, 변호사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변호활동을 하는 일이 흔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사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특히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참여권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 혹은 변호인 대신에 적어도 피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범위'(예컨대 고소권에 대한 고소대리인의 범위정도)를 범으로 정하여 그자로 하여금 피의자 신문시에 동석하게 실질적인 옴부즈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 쪽에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인 반면에 수사기관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실천방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피의자 신문 전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비디오기술의 사용은 미국법집행분야에서 점차 상식적인 일이 되고있다는 분석하여 비디오녹화의 사용은 범죄통제와 민주사회에서의 적법절차간의 이율배반적인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행가능한 법적 수단이라고 한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일을 의무화하게 되면 헌법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형사절차상의 많은 문제들, 즉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불법성을 허위로 주장하는 피의자와 위증하는 경찰간의 문제, 허위자백의 문제,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문제 등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Leo, *The Impact of Miranda Revisited*, 86 J. Crim. L.& Criminology, p. 681이하). 경찰이 강제적으로 테이프를 바꾸거나 카메라 렌즈밖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비디오녹화방법을 사용할 경우 경찰의 강압을 호소한 경우도 감소하였고, 강압 그 자체도 실제로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진영이든 자유주의진영이든 폭넓게 권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비디오녹화방법은 경찰로 하여금 부적절한 허위기소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경찰의 전문화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동시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찰행동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과 피의자 모두를 위해 가치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신문의 전 과정을 객관

적으로 그리고 재심리가 가능하도록 분명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경찰서 조사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에는 사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6.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제도화되지는 않는 이른바 예방적 법칙을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방안이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어떤 자백이라도 변호인이나 음부즈만이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진해서 한 자백이 아닌 이상 증거능력이 없게 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Amar and Lettow, in Fifth Amendment First Principles: The Self-Incrimination Clause, 93 Mich.L. Rev. 857(1995)).

7. 이상과 같은 몇가지 위법수사통제방안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이에 앞서 적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몇가지 원칙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오늘날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해 이러한 의미의 적법절차의 준수가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각종 고지절차의 이행요구이다. 특히 중요하게는 미란다고지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없이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술거부권등 미란다 고지가 현재 실무에서는 부동문자로 제시되어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받는 피의자가 진정하게 고지받은 권리의 내용을 숙지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고문수사재발방지대책’에서도 신문전 진술거부권 고지문‘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에 신문을 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고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부동문자를 제시함과 아울러 구두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에 신문에 임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8. 장차 수사기관이 물고문·전기고문·명백한 폭력의 자행 등과 같은 극단적인 가혹행위로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은 장차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일선수사기관에서도 현대적 의미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된 기법을 사용하면서 자백을 얻어내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자백배제법칙이라 하는데, 실제로 종래에는 임의성없는 자백만을 증거능력없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 법률규정의 조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쫓아 임의성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임의성을 의심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이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철야신문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1998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무시한 채 철야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법무부의 ‘고음수사재발방지대책’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게 그 실천여부가 주목된다. 그밖에 자백을 얻어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신증 신문방법이 시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알몸수색, 장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목발압수, 농아자에 대한 수화통역의 문제, 정신박약자에 대한 가혹행위 문제등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경찰은 1996년 6월 10일부터 경찰관의 비리 불친절 인권침해사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목이 감사관제도라면 그 형식상 독립된 조직이 되어야 할 테인데 이 제도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그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시정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망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문감사관에서 인권침해사태를 접수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으나 그 조사 및 판단은 독립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인권은 보편적 의미가 있다. 세계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헌법과 법률속에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등은 보편적 인권중에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인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인권은 국가의 권리, 즉 국권보다 앞선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사기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방지도도 만전을 기하여 인권의 보편적 의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1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경찰단계에서의 가혹행위방지책에 중점을 두고 몇가지 방안들을 소개하고 또 되짚어 보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검찰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수사과정에 대한 것이든 검찰수사과정에 대한 것이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사에 임하는 수사주체의 의식수준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전국민이 인권의식에 눈을 떠서 인권의식이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여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에 상응하게 의식수준을 높여 명실상부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장 주 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1. 고문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헌법에 고문의 금지를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식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음에도 고문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조천훈 고문치사 사건외에 수사과정의 고문사태가 심심치 않게 주장되어 왔다. 1999. 8.경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사받던 조유식은 잠안재우기, 폭행 등의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00. 5.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던 지태환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안산경찰서와 수원경찰서에서 살인용의자로 조사받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문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수사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자백을 얻어 수사를 해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사방법이다. 과학수사는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물적 증거위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

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런데 자백에 의지하는 수사는 자백을 강요하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관련 물증을 수집하거나 보강수사를 하는 방식의, 거꾸로 된 수사절차가 아닐 수 없다.

고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처럼 손쉬운 수사방법이라는 점외에도 고문에 의해 얻은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고문을 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문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고 고문에 의해 강요된 진술만이 남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고문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고문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고문을 해도 고문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조천훈사건과 같이 고문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되는 예는 드물었다.

법무부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고 원칙적으로 밤샘수사를 금지하며 각 부별로 CCTV가 설치된 조사실을 마련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문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긴 조치이긴 하나 특조실은 지금 당장 폐쇄하더라도 다른 조사실을 특조실처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점, 피의자 및 변호인의 동의를 얻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밤샘조사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밤샘조사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있고 체포시간을 야간으로 맞추면 밤샘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모든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가한 후 고문에 의한 억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CCTV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고문방지를 위한 CCTV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하에서는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살펴 본다.

##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고문이 행해지는 것은 장기간 수사기관에 구금되어 있을 때이므로 구속을 신

중히 하면 고문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회유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법관이 모든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를 필요적으로 신문하도록 하여 구속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고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국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규정과 불구속수사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의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피의자의 신청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필요적 심사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자백의 강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체포 또는 구속직후이므로 이 때 변호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시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부는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법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로 보장되지 않은 변호인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 예외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상 변호인의 참여는 봉쇄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접견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대검찰청예규는 “신문중인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이 접견을 요구할 때에는 검사는 신문을 중단하게 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알리고 신문이 끝난 뒤에 접견을 시켜 준다.”고 되어 있다. 또 변호인이 피의자의 접견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견불가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접견권이 단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위헌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변호인접견마저

제한하고 있는 검찰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보장하는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경찰청에서도 1999. 6. 7.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인권보호수사체계”방안의 세부지침에서 피의자신문에 앞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참여 희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고 피의자가 참여를 원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를 들어주어야 하며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피의자를 위해 도움말을 주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진실보한 것이긴 하나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공범 등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기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예외규정이 광범위하여 변호인참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실제 경찰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한 예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고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의자가 변호인의 입회를 원할 경우에는 변호인이 입회할 때까지 수사가 중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수사기관은 변호인접견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일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고 오면 진술태도가 달라진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변호인접견을 수사에 방해되는 절차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고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기는 하나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자격

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혹행위를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의외에 근본적으로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고문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4.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때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2조 제1항) 대법원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2001. 10. 9. 선고 2001도3106판결) 그런데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나아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대법원 관례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가 고문 등에 의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툰 경우에도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진술의 임의성을 거의 인정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며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실제 재판을 받기까지 통상 한달 안팎

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문사실을 입증 내지 소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재판실무상으로도 검사작성의 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이 특신상태의 진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는 한 위 단서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재판정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되어 버린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임의성을 다툰 경우에는 검사가 특신상태하의 진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범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든지 혹은 조사과정을 찍은 CCTV테이프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 5. 고문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배제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 7. 1.부터 2000. 6. 30. 까지 1년간 폭행, 감금, 고문,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경찰, 검찰, 국정원직원 및 교도관 등이 고소, 고발당한 사건은 1,035건인데 그 중 7건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되었다. 이와같이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수사관들의 고문근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식구 봐주기식으로 가볍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문관련 수사관들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관들로 하여금 고문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고문금지에 대한 교육, 수사과정상의 인권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고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고문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장 경 옥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5일 21:0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故 조천훈씨의 사망 사건은 그 동안 우리 수사기관의 비인권적 수사구조와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에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수사당국은 뼈아픈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가혹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대책 역시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크게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수사당국 스스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자백위주

의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수사환경을 개혁하는 방안, 셋째, 법원을 통한 가혹행위 근절 방안이다.

##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하고 ② 피의자의 방어활동을 도와주고 ③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변호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절대적 보장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적극적 역할의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의 접견 이후에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도중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사는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대부분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왔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조사실 외부에서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과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직접 참여하여 조서에 서명날인 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무상 보장되고 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은 검찰 수사단계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하며 이 또한 법규에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즉, 변호인의 참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진정성립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차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다.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변호인의 접견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체포·구속적부심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모든 피의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도 최소한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교통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자력이 없는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교통을 요구하면 국가는 반드시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해야 하므로 당연히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서 이상의 수사기관에 상시 변호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단체의 당직변호사제도를 형소법 등에 도입해 변호사의 당직을 의무화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충당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당장 이의 시행이 어렵다면 공익법무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및 수사환경을 개혁하는 방안

이번 사건은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수사과정 전반에 만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스스로의 인권의식을 되돌아보고 이를 함양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반인권적인 수사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수사환경을 친인권적으로 개혁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가.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탈피

수사기관이 끊임없이 가혹수사의 유혹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때문임은 기간 수없이 지적 받아왔다.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은 필연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증거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국가의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피의자신문방법 및 신문환경의 개선

피고인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을 친인권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야간철야수사를 피의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할 수 없도록 법규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야간수사라고 함은 22:00 이후의 수사를 의미한다. 단,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수사는 금지하고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피의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조사실을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지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피의자신문과정에 대한 외부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조사실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조사과정을 채록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해 지휘관들이 면밀하게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화된 테이프는 공판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특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 법원을 통한 가혹행위 근절 방안

##### 가.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에 대한 거증책임

수사는 궁극적으로 공판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전 단계이므로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사단계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하고 그 결과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조서의 경우 그 증거능력의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인 특신상태가 추정된다는 현 판례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하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불구속수사원칙의 관철

가혹행위가 대부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의자 구속에 법원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영장실질심사로 개선하여야 하고 현재 체포·구속적부심에만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피의자 보석제도를 개선하여 기소 전 구속된 모든 피의자에게도 보석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불구속수사원칙 관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5. 기타

이와 더불어 실적 위주의 검찰분위기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등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인권최우선 수사풍토』 구현방안

김 중 확  
(경찰청 수사과장)

### 1. 「고문 및 가혹행위」 절대금지

#### ○ 고문 및 가혹행위 절대금지

-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및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법증거로서 증거능력도 없음
- 사고 발생시 본인은 물론 조직전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

#### ○ 부당 조사행위 근절

- 자백강요, 폭행·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피의자 신문방법은 어떠한 경우든 허용될 수 없음

#### ○ 밤샘조사·밀실조사 원칙적 금지

- 다만, 긴급체포된 자의 영장청구기한 촉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상에 기재하고 실시
- 별도 조사실에서의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자입회 및

수사간부 감독하에 실시(소위 밀실수사는 철저히 금지)

## 2. 「적법절차 준수」 철저

### ○ 미란다원칙 고지 철저

- 피의자 체포 즉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반복교양
- 불법집회시위사범 검거시 등 개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휘관이 고성능 마이크를 공개고지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고지

### ○ 인권관련규정 준수확행

- 통신비밀보호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수사관련 주요법령의 “인권관련 규정”을 반복교양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강화

#### 【 인권관련 주요규정 】

- 유치인에 대한 진정권의 보장(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당사자 통지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 3. 「피의자·유치인 인권보호」 에 노력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활성화

- 관서별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대국민 홍보강화
- 출석요구서에 동내용 게재, 피의자신문전 그 취지와 목적 고지

### ○ 신체검사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개정중

- 인권위원회, 여성부, 법무부 등과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 ○ 유치인 인권보호제 활성화

- 유치인 최초 입감시 인권위 진정권 및 진정절차 고지
- 유치장근무자들의 폭언·가혹행위등 절대 금지(교양·감독강화)
- 유치인 선도위원회 등 활용, 유치인 상담 및 계도활동 강화

#### ○ 인권친화적 유치장환경조성에 계속노력

- 유치인의 급식·위생관리 및 관할 보건소 등과 진료협조 강화
- 유치장내의 적정한 조도 및 온도 유지 등 편의시설 개선

#### ○ 유치인의 급식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노력 필요

※ 인권보호차원의 획기적 개선조치 필요(기획예산처 협조)

### 4. 수사관행의 과감한 개선노력

#### ○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행정개선노력 경주

- 참고인등에 대한 E-mail 등 비대면 조사확대시행
- 경찰관서 관할에 상관없는 민원서류 발급으로 국민편익 도모

#### ○ 긴급체포 남용방지

- 가급적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강화
- 지명통보 금액의 상향조정(100만원⇒500만원)으로 긴급체포 감소 예상
- ※ 긴급체포후 석방시 사전검사승인을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필요

### 5. 제도적 검토사항

#### ○ 실질적인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확대

- 전 수사단계에 변호인 입회보장, 다만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는 방안 필요

- 경찰의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 요망

○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수단 강구

- 수사단계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은 무고한 범죄인 발생 우려, 수사기관 업무방해 등 문제점이 있어 처벌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선진화된 과학수사기법 개발 등 획기적 개선

- 갈수록 지능화 교묘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려운 바, 과학수사 발전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자백위주의 수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보다 선진화된 과학수사기법 및 기자재의 개발이 계속 필요함

○ 피의자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CCTV로 녹화

- 경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을 전부 녹음토록 하고 조사실에 CCTV를 설치, 테이프를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이 필요
  - ※ 영국은 '84년부터 경찰과 검찰의 모든 조사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조사실은 이를 폐쇄하거나 입회·감독의 강화가 요망됨

○ 과도한 실적경쟁 분위기 지양

- 경찰서간, 개인간의 과도한 경쟁 분위기는 강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잉경쟁은 지양되어야 하고
- 상급기관의 사건 조기해결 압력도 같은 맥락에서 지양 필요

6. 인권교육강화

-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별 인권강좌 설치, 지속운영

- 국가인권위·인권시민단체 등과 협력, 경찰관서별 인권교육 강화 등